

장기요양보험 주요 부당사례

2019. 7

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 제37조제1항의5, 제60조 및 제61조제1항, 「행정조사기본법」 제10조, 제11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자료의 제출, 관계인에게 질문 또는 관계서류를 검사할 수 있으며, 검사를 거부·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답변한 경우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의 취소 등 및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」 제29조와 관련 행정처분의 기준에 근거하여 현지조사 거부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등 수행함

1 적절한 수사의례

00장기요양기관의 대표자 A는 '18.2월 실시하는 현지조사에 대하여 사유없이 1차 거부한 건으로 업무정지 6개월 및 과태료 100만원 처분을 하였으며 해당 지자체와 협의하여 경찰서 지능범죄수사대에 수사의뢰 후 '18.10월 2차 현지조사를 실시함

2 신속한 행정처분

00재가기관의 대표자 A는 '17.7월 실시한 현지조사를 1차 거부하여 해당 지자체에서 즉시 행정처분안을 전송 하였으며 동월 2차 현지조사를 실시한 후 행정처분사전통지(청문실시통지), 행정처분확정통지까지 신속한 조치를 통해 약 2개월 만에 행정처분 처리함

00장기요양기관의 대표자 A는 '18.9월 실시한 현지조사를 거부할 목적으로 잠적하여 연락이 두절, 1차 거부하여 해당 지자체에서 즉시 행정처분안을 전송 하였으며 동월 2차 현지조사를 실시한 후 행정처분사전통지(청문실시통지), 행정처분확정통지까지 신속한 조치를 통해 약 2개월 만에 행정처분 처리함

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 제23조 및 동법 제35조, 「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」 등에 근거하여 가정방문급여는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제공하여야 하고, 해당 방문시간 동안 수급자 1인에 대하여 전적으로 제공하여야 함

1 부당청구 공모(담합) 사례

00재가기관의 시설장 A는 '17.9월~18.10월까지 총 19개월동안 개인사업을 하는 여동생 휴대폰으로 B요양보호사가 서비스하는 수급자 C, D 2명과 공모하여 수급자별 각 25만원씩 지급하고 미부착 태그로 대리 전송하고 허위 청구함

00재가기관은 '16.1월~18.12월까지 총 36개월동안 수급자 모집 브로커 역할을 하며 등급판정부터 부당청구 사전준비 시작하여 등급을 받으면 서비스 미제공을 담보로 매월 약 30만원 현금지급을 보장함

2 수급자, 종사자 등 제도 인식 부족

00재가기관의 A요양보호사와 B수급자는 '17.9월~'18.9월까지 총 12개월 동안 방문요양을 제공하지 않는 조건으로 월 10만원씩 지급 받기로 담합하고 허위로 청구 함

00재가기관은 '16.5월~10월, '17.4월~'18.12월까지 총 29개월동안 요양보호사가 작성한 급여제공기록지의 제공시간과 다르게 급여제공기록지를 임의 변경하여 늘려서 작성하고 청구 함(청구심사에서 타 기관과 급여중복 확인되어 심사불능 처리)

00재가기관 대표A가 보호자 B, C, D와 담합하여 '17.1월~'18.5월까지 총 29개월 동안 매월 20만원~40만원 지급하기로 하고 요양보호사인 딸 명의의 휴대폰으로 사무실 또는 집에서 미부착 태그로 대리 전송하고 허위 청구함

보호자 A가 공단 모니터링을 피하기 위해 '17.6월~'18.2월까지 총 9개월 동안 심야 시간(22시~06시)에 서비스 미제공 요양보호사의 휴대폰을 보관하면서 대리 태그하고 허위 청구함

독거 수급자 A집 근처 거주하는 요양보호사 B가 서비스 시작과 종료만 태그하고 수급자에게는 서비스 미제공 대가로 쌀과 식료품 등을 제공함